2023년 오프라인 해외판촉사업 안내

1. 사업추진 절차

① 사업신청	⇨	② 평가 및 선정결과 통보	⇨	③ 행사계획서 제출
바이어 → aT해외지사		aT본사 → aT해외지사 → 바이어		바이어 → aT해외지사
				⇩
⑥ 사업비 송금	⇦	⑤ 사업 결과보고 및 비용 정산서류 제출	⇦	④ 행사추진
aT본사 → 바이어 *법인명의 계좌송금원칙		바이어 → aT해외지사		aT해외지사에서 행사점검

2. 지원기준

1) 판촉형태

○ 판촉은 **반드시 현지 유통채널 내 행사품목이 입점**되어 있어야 하며, **시식 또는 시음활동이 이루어져야 함**

- 시식활동이 어려운 경우 **유통매장 내 행사관련 홍보물이나 장치 필수 설치** (현수막, 배너, 판넬, 매대설치 등)
- 오프라인 유통매장을 기본으로 하되, 비대면(온라인시식, SNS 홍보 등) 플랫폼 활용 가능

< **예 시** > * 항목별 지원기준 해석이 필요한 경우 aT와 사전협의 필요
① 제품소개나 레시피 콘텐츠 제작 배포, 유튜브, 페이스북 등 활용 미디어 홍보 및 이벤트 실시, 앤드캡, KIOSK 및 E-Pop 스크린, 무인 전용매대 설치, 시식체험을 위한 푸드트럭, 온라인 시식 등
② O2O매장 행사 관련 해당사이트 메인페이지, 슬라이딩, 배너광고 제작, SNS, 유튜브 내 쇼핑태그, 링크 등
* 온라인몰은 오프라인 매장과 직접 관련된 곳이거나 '유통매장 전용관' 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
(ex 중국 하마선생 유통매장 연계 하마선생앱 홍보 가능, 태국 TheMall 매장 연계 HappyFresh앱 내 TheMall 전용관 홍보 가능)

- 오프라인 유통매장 판촉 없이 <u>단순 제품설명회, 홈쇼핑 판촉, 카탈로그 제작 등 추진 불가</u>

2) 사업의무액

○ <u>**사업 신청 시 업체가 제시하는 목표수입액을 사업의무액으로 간주하며, 신청 예산의 최소 2배 이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해야 100% 정산 가능**</u>

- 판촉행사 품목의 **수입의무액(CIF기준)**으로 행사기간 전후 30일 동안의 수입실적으로 달성여부 판단, 미달성 시 달성 비율(%)에 따라 최종지원금 감액 지급

ex) 신청예산 한화 5천만원일 시 수입의무액 최소 1억원(2배) 기재 및 달성 필요

- 공식 수입신고서 제출하되, 인보이스 제출시는 B/L첨부(불가피한 경우 사유서, 수출신고필증 제출)
- 중국지역의 경소상 연계 판촉의 경우, 거래관계 수입상으로부터 받은 수입대행증명 첨부
- 벤더일 경우 수입상과 거래관계증빙(계약서 등)과 수입상으로부터의 구매영수증(2배이상) 동시 제출시 인정

3. 기타

○ 행사국가, 매장, 품목은 변경불가가 원칙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aT 해외지사 승인을 받아야 함

○ 사업비는 '선지출, 후정산' 원칙으로 결과보고시 정산증빙 서류 제출 필요

* 지원항목별 필요 정산 증빙은 각 aT해외지사로 문의